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4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이해민·최민희·차규근

정춘생 · 김재원 · 황운하

서왕진 • 강경숙 • 김준형

조 국・김선민・박은정

신장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 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 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제134조제2항 중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를 "정지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u> <신 설></u> | ④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 | |
| |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 | |
| |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 | |
| |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 | |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 | |
| 과) ① (생 략) | 과)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 ② | | |
|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 | | | |
| 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 | <u>정지된다</u> . | | |
| 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 | | | |
| 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 | | |
| <u>없다</u> . | | | |